

생명안전 과제 제안 공동 기자회견

2020.04.01 (수) 오전 10:30

국회 소통관

생명안전 과제 공동제안
재난·산재 참사 피해가족 및
시민사회단체들

생명·안전사회 기본 원칙 | 2

공동기자회견 성명서 | 4

시민사회 제안 생명안전 과제 개요 | 7

생활안전 과제 | 8

일터안전 과제 | 35

시민사회 제안 생명안전 과제 책임작성자 및 검토 단체 | 51

참여단체 | 52

생명·안전사회 기본 원칙

2017년 4월 13일 '생명 안전의 날'
안전한 나라 만들기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

우리사회는 위험사회이다. 사람의 생명을 돈보다 가볍게 여기는 사회, 생명의 안전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위험이 점증하는 지금, '생명의 존엄과 안전'을 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삼아야 한다. 그것이 세월호참사가 우리에게 남긴 과제이다.

1. 생명 존중이 안전이다

정부는 안전을 '영토안보'와 '재산권보호'로 간주한다. 안전을 위해서 시민들은 통제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안전은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며, 사회의 제도와 정책이 생명 존중의 가치를 전제로 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2. 기업의 이윤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

기업의 이윤을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다. 생명의 안전을 비용으로 간주하고, 안전장치를 규제로 여기는 인식을 변화시켜야 하며,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기업의 이윤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3. 위험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사회적 약자가 더 많이 보호되어야 한다

우리사회에서 위험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집중된다.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고 자신의 권리에 대해 말하기 어려운 조건 때문이다. 생명 안전과 관련하여 사회적 약자는 더 많이 보호되어야 하고, 제도적 자원이 더 많이 사용되어야 한다.

4. 안전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지 않다

생명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은 개인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에 있다. 기업과 정부가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이며, 안전에 노력을 다하지 않은 기업과 정부의 실질 책임자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5. 생명·안전에 대한 책임은 정부와 기업에게 책임이 있다

정부와 기업은 위험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일상적으로 위험을 관리·감독해야 한다. 재난과 참사가 발생했을 때 생명구조를 일순위로 하며, 재난관리 체계를 갖추고 일상적 훈련을 해야 한다. 재난과 참사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권리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

6. 재난과 참사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재난과 참사 피해자는 참사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알아야 하고, 권력의 책임이 큰 경우 별도의 독립적 기구를 통해 진실규명이 이루어지도록 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충분하게 배상을 받고 치유받을 권리가 있다.

7. 생명·안전을 지키려면 시민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생명의 존엄과 안전을 위한 주체는 시민과 노동자이다. 노동자와 시민은 위험에 대해 알 권리, 위험작업이나 환경을 회피하거나 거부하고, 기업과 정부에 개선을 요구할 권리, 안전을 위한 각 제도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8. 생명과 안전을 위해 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한다

재난과 참사를 공동체의 과제로 인식하여 재난과 참사에 대해 기억하고 기록해야 한다. 피해의 회복은 공감과 연대로부터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고통을 나누어야 한다. 사회 전체가 국가와 기업이 생명 안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1. 국회는 늘 뒷북, 이제 그만

지금 우리 국민 모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 수용자,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이주노동자 등은 물론이고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은 더욱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대표' 기관임을 자임하는 국회의원들은 제대로 된 대응을 위한 포괄적인 법제개선을 적시에 고민하고 논의하지 못했습니다.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자 재난취약층 일부에 대한 '마스크 지급'외에는 통제 강화 위주의 대책만을 담은 코로나 3법을 뒤늦게 통과시켰습니다.

이처럼 국회에서 생명과 안전에 관한 법률안 처리는 항상 뒷전이고 부실했습니다.

사람이 죽고 많은 희생과 피해가 있고 나서야 그나마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문제도 그러했고, 위험의 외주화 문제, 민식이법과 해인이법(어린이 교통안전 관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에 대한 알 권리를 제약하고 '삼성 청부법'이라고 불리는 산업기술보호법은 제대로 심의도 않은 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습니다.

너무나 대비되는 모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대하는 국회의 현주소입니다.

2.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는 정당과 정치인의 가장 우선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는 이제 정치인과 정당의 가장 우선적인 책무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에게 맡겨놓고 문제가 심각해지면 정부 탓만 하고 뒷북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의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은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문제 해결에 충실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피해자와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더 이상 사회적 가치가 배제된 이윤 우선의 기업 입장만 대변하거나 당리당략에 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3. 여야 총선 후보들에게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과제들을 제안합니다.

안전하게 살 권리,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위협에 대해 알 권리, 신종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피해자의 인권 보호,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기후위기 대책, 안전한 먹거리, 교통안전 등 모두가 안전하게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 생명안전 의제를 공약에 반영하십시오. 21대 국회에서 이 과제를 해결하십시오.

4. 국민의 대표임을 자임하는 국회의원과 후보들은 명심하여야 합니다.

선거 때만 국민들 앞에 허리 꺾어 인사하고 악수를 한 명이라도 더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진정 국민들을 위한다면 그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받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개선하십시오.

5.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정치인들에게 요구하고 참여합니다.

누구나 갑작스레 생명과 안전에 위협에 처할 수 있는 '위험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의 생명 보호와 안전을 지키는 일, 안전한 공동체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요구와 참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관련 법이 제대로 현실을 반영하여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국회의원과 정당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 해결을 지자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요구합니다.

6. 우리는 선거 과정과 21대 국회 활동 4년 동안 국회의원들과 각 정당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하는지 모니터링하고 감시하고 평가할 것입니다. 매년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4년 후 투표로써 국회의원들의 활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 생명안전 과제 -

● 생활 안전 분야

- ① 모든 사람의 생명·안전 기본권 보장
 - 생명·안전 기본권 헌법 명시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 ② 피해자 인권보장
- ③ 감염병 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 ④ 가습기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 피해 예방 및 가해기업 책임 강화
- ⑤ 공공교통 안전 강화
- ⑥ 먹거리 안전 강화
- ⑦ 탈핵 에너지 전환
- ⑧ 화학물질 안전 강화
- ⑨ 석면 안전과 철거관리 강화

● 일터 안전 분야

- ① 위험의 외주화 금지
- ② 모든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 적용
- ③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위험에 대한 알권리 보장
- ④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 ⑤ 과로사 예방법 제정
- ⑥ 노동자·시민 알권리와 참여 보장

시민사회 제안 생명안전과제 개요

분야	번호	과제	세부 과제
생활 안전	1	모든 사람의 생명·안전 기본권 보장	- 헌법에 생명·안전권 명시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보호
	2	피해자 인권 보장	- 피해자의 권리의 구체적 보장 - 피해자 집단 소송제도 도입 - 사고에 대한 독립적 조사 및 피해자 참여권 보장
	3	감염병 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	- 감염병 대응기구 조직개편 및 역량 강화 - 공공의료 확대 -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 감염병 대응 의료개혁위원회 구성 - 상병수당 실질적 도입 -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제도 개선
	4	가습기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 피해 예방 및 가해기업 책임 강화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 - 배상액 상한없는 징벌적 배상법 도입 -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 화학물질·제품 안전 대책 강화
	5	공공교통 안전 강화	교통기본법 제정 - 통합적 공공교통 체계 구축 - 교통약자 존중 정책 도입 - 교통재정체계 개편 - 교통분야 민자사업 중단
	6	먹거리 안전 강화	- 국민의 알권리 보장, 제대로 된 유전자조작식품(GMO) 표시제도 시행
	7	탈핵 에너지 전환	- 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 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 개선 및 안전성 강화 -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수립 - 핵재처리 연구 금지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개혁 - 생활방사능 안전 및 발전소 주변지역 피해주민 대책 마련 등
	8	화학물질 안전 강화	-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 개선 -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개선
	9	석면 안전과 철거관리 강화	- 학교 석면철거 안전 강화 - 석면철거 시민참여권 확대 - 환경보건 안전교육으로 알권리 확대 - 슬레이트 제거 공동체 운동 필요
일터 안전	1	위험의 외주화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재개정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행 - 각종 조사위의 제도개선 권고 이행
	2	모든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 적용	
	3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 위험에 대한 알권리 보장
	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 강화 - 원청 책임 강화 -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5	과로사 예방법 제정	- 괴롭힘 등에 대한 종합적 예방과제 수립 - 장시간 노동 집단에 대한 총체적 예방과제 수립 - 정부부처간 합동 종합적 예방과제 수립 - 피해집단 및 시민사회 참여 거버넌스 구축
	6	노동자·시민 알권리와 참여 보장	- 국민참여 조사위 법제도화 - 위해 위험 정보 공개 제도화 - 작업종지권 보장 - 노동자·시민 참여 보장 제도화

* 참조 : 대분류는 '생활 안전'과 '일터 안전'으로 나눔. 번호는 중요도 순서가 아님



모든 사람의 생명·안전 기본권 보장

1. 과제명

모든 사람의 생명·안전 기본권 보장

2. 세부과제

1) 헌법에 생명·안전권을 ‘기본권’으로서 명시

① 헌법개정을 통해 자연재난과 사회적 재난을 포함한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기본권으로 규정

2) 모든 사람의 생명·안전권을 보장하는 ‘생명안전기본법’(가칭) 제정

① 안전을 법률의 차원에서 모든 사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

② 안전의 기본 원칙,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안전정책 수립의 기본방향 및 체계, 안전에 대한 정부·기업·공공의 책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혼재된 안전 관련 개별 법률을 체계적으로 규율

③ 안전사고(자연재난과 사회적 재난을 포함하는 개념임, 이하 같음) 피해자의 권리, 안전사고 피해자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조사위원회, 안전사고 대응에 관한 총괄 기구(컨트롤 타워)와 구제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 피해자 및 시민 중심의 효율적 안전사고 대응 거버넌스 구축

④ 안전에 대한 위험 예방을 위한 안전영향평가제도 도입, 안전에 관한 정보접근권 보장, 추모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책 수립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의 모든 단계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권 보장체계를 구축

3)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보호

① 안전 관련 하위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보호에 관한 규정을 필수적으로 도입

②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범위는 노인·어린이·여성·장애인·청소년 등 특정할 수 있는 집단 뿐만 아니

라 가난·건강·비정규직 노동자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포섭할 수 있도록 규정

③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이동지원·주거지원·심리지원·생활지원·휴직지원·법률지원 등 특별한 보호의 내용을 권리 보장의 관점에서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규정

3. 목적

안전 관련 문제로부터 모든 사람의 인권을 차별 없이 보호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발생하는 피해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보장하며, 적절한 조사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안전권을 보장하는 안전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4. 필요성

1) 우리나라는 한 해에 약 2,500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고, 다양한 자연 재난과 사회적 재난으로 시민들이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사례가 빈번하였음. 세월호참사, 메르스 사태, 가슴기 살균제 참사, 코로나19 등 최근 발생한 각종 참사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평등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위험사회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2) 안전사고는 개인의 위법행위로만 발생하는 결과라기보다 정부·기업 등의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와 부실, 생명·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인식과 관행, 불평등을 야기하는 사회·경제구조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3)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안전사고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안전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생명·안전이 국가의 '시혜'가 아닌 모든 사람이 가진 '권리'로서 보장될 필요가 있음

5. 현행 제도의 문제점

1) 현행 헌법과 법률은 '생명·안전권'을 기본권으로서 명시하고 있지 않음. 헌법은 제34조 제6항에서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재해예방과 국민 보호에 대한 국가의 노력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음

① 물론 위 헌법 제34조 제6항의 '보호의무',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5조의 '환경권', 헌법 제37조 제2항의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 보장' 등으로부터 생명·안전권은 헌법 상 기본권으로 도출될 수가 있음

② 그러나 생명·안전권을 사법적으로 관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을 통해 생명·안전권을 직접 명시함으로써 생명·안전권의 기본권으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재난구호법' 등 안전과 관련된 기본법제는 존재하고 있음. 그러나 그 적용범위가 주로 자연적 재난에 한정되는 등 '안전' 전반을 규율하고 있지 않음

① 구체적으로 '안전'의 개념을 정의한 법률은 존재하지 않음 '안전'에 관한 가치가 협소하게 해석될 수 있음.

②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재난구호법' 등 기본법의 성격을 갖는 법률들은 자연재난에 대한 물리적 복구 등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바, 이는 안전의 보장을 피해자 또는 시민의 권리가 아닌 국가의 시혜로 인식하고 있는 것임

③ 따라서 모든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의 보호 및 피해자들의 보호가 안전정책의 기본임을 명확히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음

3) 재난안전기본법은 "안전취약계층"을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이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고(제3조 제9의3호), 안전취약계층에 대해 안전 환경을 지원할 국가의 노력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음(제31조의2항). 또한 안전취약계층의 범위나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개별 규정으로서 보장하고 있는 안전 관련 개별 법률은 사실상 전무함

① 참고로 국회는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에서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 규정(제49조의2)을 신설하였음. 늦은 입법임과 동시에 신설된 규정의 내용도 취약계층의 범위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의 내용을 매우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음

② 안전사고는 결코 모두에게 평등하게 다가오지 않음. 최근 코로나19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여성, 가난한 사람, 비정규직 노동자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안전사고에 더 취약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따라서 다양한 취약계층을 특별히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안전 관련 개별 법률에 각 규정될 필요가 있음

피해자의 인권 보장

1. 과제명

피해자의 인권 보장

2. 세부과제

1) 안전사고 피해자 권리의 구체적 보장

- ① 기본법에 신속하고 적절한 구조를 받을 권리,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의료지원, 생계지원, 배·보상의 권리, 인도적 처우를 받을 권리 등을 안전사고(자연재난과 사회적 재난을 포함하는 개념임, 이하 같음) 피해자의 권리로 규정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안전사고 피해자들의 기억과 추모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피해자들을 존중할 의무가 사회 전체에 있음을 명시
- ③ 피해자의 범위는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과 그 유족뿐만 아니라 정신적 질병과 부상을 입은 사람, 목격자, 안전사고 지원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 규정

2) 피해자 집단 소송제도의 도입

- ① 안전사고로 인해 수인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 중 1인 또는 수인이 대표 당사자로서 정부와 기업 등 관련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소송제도를 마련
- ② 안전사고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음. 이에 피해자들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피해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

3) 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적 조사 및 피해자의 참여권 보장

- ① 안전사고의 원인 제공자가 정부와 기업인 경우, 피해자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독립적 조사기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
- ② 모든 안전사고의 원인과 그 대응의 적절성에 대한 조사과정에 피해자의 참여절차를 권리로서 보장. 특히 상시

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

3. 목적

안전사고 발생 시 희생당한 사람의 유족들과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의 권리를 법률의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피해자의 집단소송과 안전사고 조사에 대한 참여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와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

4. 필요성

1) 안전사고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야기함. 안전사고로 훼손되는 피해자의 존엄성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결국 사회구성원 모두의 존엄을 훼손하는 것임

2) 따라서 국가는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이를 규범적으로 관철하기 위해서는 안전사고 피해자가 가지는 권리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3) 또한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함. 이러한 관점에서 입증책임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피해자들의 권익을 강화하는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것임

4) 안전사고 피해자의 회복은 그 발생 원인과 책임에 대한 철저한 진실 및 책임규명이 전제될 때 가능함. 즉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철저한 안전사고 조사가 필요한 것임. 이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조사기구에 의한 조사와 피해자가 직접 그 조사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절차가 권리로서 보장될 필요가 있음

5. 현행 제도의 문제점

1) 현행 안전 관련 법률 중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안전사고의 피해자의 권리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개별 법률도 해당 법률이 피해자에 관한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보호의 수준이 상이할 수 있음

2) 안전사고 피해자들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집단소송제도는 현재 그 논의가 미진함.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지만 그 내용이 불충분하고 통과되지 않았음. 특히 국회는 최근 피해자들이 절실하게 요구한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뺀 가슴기살규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한 대안을 의결하기도 하였음. 이는 국회가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의지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임

3) 현행 법률은 안전사고에 대한 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은 일정한 경우 정부가 재난원인조사단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69조). 그러나

참여 범위가 한정적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를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조사기구라 평가하기는 어려움. 또한 안전 사고 피해자가 그 사고의 원인 또는 대응의 부적절성에 관한 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공식적으로 접수할 수 있는 절차는 전무 함. 안전사고 발생 시 그 원인 조사의 비독립성과 폐쇄성은 안전사고 피해자와 시민단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된 사안임



감염병 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1. 과제명

감염병 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2. 세부과제

1) 감염병 대응기구 조직개편 및 역량 강화

① 질병관리본부 개편

- 질병관리본부를 독립된 '청'으로 승격
- 보건복지부 내 복수차관제 도입

② 대응기구 역량 강화

- 검역관, 역학조사관 등 관련 인력 대폭 확충
- 공공보건 위기시 민간의료자원(인력 및 시설) 재배치 권한 및 의료품/기기 생산 조정 권한을 관련 법률로 부여
- 기구 내 전문가로 구성된 '위기소통센터' 설립

③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④ 음압병실 지역별 및 전국적 확충

2)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과제 1- 공공의료 확대

- ① 공공의료 비중을 최소 30% 이상으로 확충(권역별 최소 25% 이상으로)
- ② 공공의료인력 확충

3)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과제 2- 전국민주치 의제 도입

4)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과제 3- '(가칭)감염병 대응 의료개혁위원회' 구성

- ① 감염병 유행에 대처할 수 있는 응급진료체계 및 호흡기 환자 및 감염병환자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개혁 추진
- ② 이를 위해 시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한시적인 대통령 산하 특별기구 구성

5) 상병수당 실질적 도입

6)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제도 개선: 유급 질병휴가 및 유급 가족돌봄휴가 법제화

3. 목적

- 1)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의 주무 정부기관 역량 강화 및 관련 인력 및 시설 강화
- 2) 감염병 유행시 초기 빠른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공공의료 역량 강화
- 3) ‘전국민주의의제’를 통해 감염병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함. 일상적 시기 및 공중보건위기상황에서 적절한 지역사회 내 대응을 가능하게 할 기본 체계 확립
- 4) 감염병 대유행시 병원 내 전파를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일반 중증환자 진료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함. 한시적인 특별기구의 논의를 통해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응급진료, 호흡기환자 진료 및 감염병 환자 진료체계를 구축
- 5) 상병수당의 실질적 도입을 통해 질환으로 인하여 개인이 저소득층으로 전락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사회적 장치 마련
- 6) 지역사회감염(직장내 집단발병, 아동과 청소년 집단발병)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

4. 필요성

1) 감염병 대응기구 조직개편 및 역량 강화

- ① 신종감염병의 경우 초기 대응이 중요한바, 대구시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부족한 관련 인력과 시설을 확충해야 함. 또한 대응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으로서 현재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과 복지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에서 복수차관제를 두고 보건업무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② 마스크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이후 코로나감염자가 보다 폭발적으로 증가할 경우 보호복, 보호장구, 산소공급 기기 등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필요한 필수 의약품 및 기기마저 부족할 수 있음. 이러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관련 의약품/기기를 확보하기 위해 생산과정에 대해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로 부여할 필요가 있음
- ③ 특정 지역의 폭발적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의료자원(인력 및 시설)에 대해서도 일정한 재배치 권한이 법률적으로 주무부처에 주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④ 인포데믹으로 메탄올 소독제 중독사고와 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하였었음. 가짜뉴스에 시민들이 혼란을 겪는

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대응기구내 '위기소통센터'를 설립함으로써 대시민, 대언론 위기소통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공공의료 확대

감염병 유행시 빠른 초기 대응이 요구하나 필요한 시설과 인력은 신종감염병의 진행양상에 따라 매번 다름. 상황에 맞춰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공공의료 자원임. 우리나라는 병상수 기준 공공의료 비중이 10%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음. 시장원리에 따른 의료체계를 가진 미국조차 25% 수준임. 공공의료 비중을 최소 30% 수준까지 확충해야 함. 또한 특정지역에 신종감염병이 창궐할 경우를 대비할 때 권역별로 적정 공공의료 자원이 배분되어 갖추어지는 것이 필요

3) 전국민주치 의제 도입

① 현재 위기소통방식으로는 개인의 질환 등에 맞게 개별적 맞춤 정보를 제공하고 행동지침을 주기는 어려움. 특히 기존 환자들은 기존 질환에 대한 대처와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처를 동시에 해야 함.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제도방안은 전국민주치 의제도밖에 없음

② 전국민주치 의제는 일상적 시기에도 의료비용을 줄이고 동시에 시민들에게 가장 적절한 의료정보 제공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건강향상을 가져올 것이라 기대되고 있음. 또한 이 제도를 통해 평상시 지역사회 내 신종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일상적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감염병 유행시기에는 지역사회 내 유사증상환자 상황 파악 및 기존 환자 중심으로 적절한 정보 및 행동지침을 제공해줌으로써 전사회적 대응력이 향상될 것이라 기대됨

4) '(가칭)감염병 대응 의료개혁위원회' 구성

① 코로나19감염증처럼 중장기적으로 신종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일반 중증환자 진료가 축소되는 일이 흔히 나타남. 타 질환 입원환자 중 신종감염병 감염이 입원 후 확인되어 이미 병원 내 전과가 이루어지거나 병원 기능이 마비되는 일 또는 이를 염려하여 일반 중증환자 진료마저 미루어지는 상황은 최소화 되어야 함

② 이를 위해서는 특히 대학병원 등 3차병원의 응급진료 및 입원진료 과정에 대해 적절한 변화조치가 절실히 필요함. 가령 대학병원 응급실 내 1인실 진료를 늘리는 문제 등이 그러함. 현재의 국민안심병원처럼 호흡기, 감염병 환자 진료기능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일반 환자 진료를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병원내 구조 및 인력의 변화 등이 필요함. 이러한 과정은 시민, 의료계, 정부 등의 긴밀한 논의와 협력이 필요한바, 한시적 특별기구를 구성하여 이를 통해 관련 의료개혁조치가 추진될 필요가 있음

5) 상병수당 실질적 도입

: 상병수당은 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동안 상실되는 소득 또는 임금을 현금수당으로 보전해주는 건강보험 급여임.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상병수당을 줄 수 있다고 규정은 해 놓았으나, 현재는 유명무실한 상태임. 이에 따라 치료과정에서 경제적 활동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생계가 어려워지는 일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 따라

서 상병수당을 도입함으로써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가계의 경제적 처치마져 악화되는 일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필요

6) 유급 질병휴가 및 유급 가족돌봄휴가 법제화

: 코로나19의 지역사회감염(직장내 집단발병 및 아동, 청소년 집단발병)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고 있음. 유증상자 및 접촉자 자가격리 및 아동, 청소년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급 질병휴가 및 유급 가족돌봄휴가의 법제화가 시급히 필요함

가습기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가해기업 책임 강화

1. 끝나지 않는 피해자들의 고통「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개정

1) 목적: '가습기살균제증후군' 전신 질환 피해 인정 · 판정기준 완화, 피해 입증 책임 전환

① 폐 질환 등 8가지 질환에 국한된 피해 지원 기준 대신 가습기살균제 노출 피해 전반을 '가습기살균제증후군'으로 재정의해 전신에 걸친 피해자들의 고통에 배 · 보상 비롯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의 입증 책임도 더 완화되어야 함

② 희생자 기억 · 추모 공간 및 피해자 지원 재단과 전문병원 설립 등 위한 법적 근거 필요함

2) 제도 개선 필요성 (현행 제도의 문제점 등)

① 환경부에 제출된 용역보고서 등 상당수 연구에서 정부의 인정 질환 외에 전신 질환이 확인되고 있음. 지난 3월 6일 개정된 피해구제법이 오는 9월 25일 시행돼 피해자들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이 완화되긴 했으나, 지금과 같이 피해 질환 인정이 제한적이며, 환경보건당국의 역학조사가 너무 더딘 상황이라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한 지원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②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보듯 가해기업들은 제품의 출시, 판매, 유통, 표시, 광고 전반에서 인체 안전성 사전 검증 및 확인 책임이 있음에도 일부 기업들은 관련 연구 자료들을 은폐하거나 조작하고 관련 증거들을 인멸한 사례가 다수 있음. 더구나 생활화학제품 정보의 비대칭성에 비추어 볼 때, 「제조물 책임법」 등 최근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관련 법제들에서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추세임. 평생 지속되는 참사 피해의 특수성으로 볼 때, 더 전향적인 대책이 절실함

2. 생명 · 신체 피해에 배상액 상한 없는「징벌적 배상법」도입

1) 목적: 고의나 중과실로 생명·신체에 피해 입힌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액의 법적 상한 폐지

- 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보배상 외에 재발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법률로 상한의 제한을 두지 않는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안 제5조)을 핵심 내용으로 함
- ② 징벌적 배상액의 50%를 가해자가 대법원에 공탁해 동일한 혹은 동종의 불법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 사이에 분배할 수 있게 함

2) 제도 개선 필요성 (현행 제도의 문제점 등)

- ① 가장 큰 피해를 안긴 옥시 법인은 2016년 검찰의 대대적 수사와 국회의 국정조사, 형사재판이 시작되자 뒤늦게 1~2등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에 한해 자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1500억 원 가량의 최종배상안에 따라 합의를 추진해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음. 옥시의 본사가 있는 영국에서 벌어진다면 징벌적 피해배상 외 매출액의 10%인 1조8천억 원 가량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음. 또 징벌적 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있는 미국이었다면 천문학적 배상액에 법인 존립 자체가 위협 받았을 것임
- ② 실제 배출가스 조작이 드러난 폭스바겐은 미국에서는 징벌적 배상이 적용되기도 전에 약 17조원을 들여 피해 배상에 나섬. 반면 배출가스 조작이나 화재 결함 등으로 문제가 된 독일 자동차업체들은 한국 소비자에 대해 특단의 배상조치를 따로 취하지 않음. 제품 안전성에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득을 취하고자 이루어지는 영업활동에 전보 배상 책임에 국한되거나 그 책임조차도 묻기 어렵다면, 이같은 우리 법제로는 기업들에 가슴기살균제와 같은 참사의 재발 방지책을 충실히 할 거라 기대하기 어려움
-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조물 책임법, 환경보건법 등에 개별 입법돼 있으나, 이를 징벌적 배상 개념으로 종합해 별도 법제화 필요

3. 소비자 피해에 대한 기업 배상 책임 강화하는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1) 목적 : 집단소송 범위 확대, 집단소송 제기의 걸림돌 해결

- ① 증권 분야에만 한정된 현행 집단소송 적용 범위를 적어도 기업의 제조, 광고, 담합, 판매, 소비자 정보 관리 등 소비자 일반 분야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우선 적용토록 해야 하며, 나아가 의료, 환경, 노동, 자동차, 주택, 행정, 항공, 교통 등 집단 피해가 우려되는 모든 분야로 확대해야 함
- ② 피해자의 입증 책임 완화하고 가해기업들이 사실관계 입증토록 책임을 전환해야 함
- ③ 집단소송을 관할하는 법원도 피고인 가해기업의 본사 지역에 국한되지 않도록 관할을 풀어서 해외법인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함. 법원의 소송 허가 시,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을 6개월 내에 하도록 하거나, 즉시항고나 재항고가 제기되더라도 본안심리를 계속하도록 해야 함
- ④ 다수 소비자의 피해가 일어났을 때, 50인 이상의 피해자가 대표당사자의 요건을 갖출 경우 법원이 집단소송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법원은 대표당사자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피해자 모두에

게 집단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고지해, 개별 피해자들이 소송에 참가하거나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opt-out)을 도입해야 함

2) 제도 개선 필요성 (현행 제도의 문제점 등)

- ① 법무부가 2018년 9월 발표한 도입안에서 기존 증권관련 분야에서 ▲ 제조물책임, ▲ 부당 표시·광고행위, ▲ 식품안전 등 6개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2019년 9월 당정 협의로 적용 범위 제한을 없애고, 증거개시명령제(디스커버리제)를 도입하겠다고 한 바 있으나, 20대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② 그러나 가슴기살균제 참사, 라돈 침대, 발암물질 생리대, 맥도널드 햄버거병(용혈성 요독 증후군: HUS)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BMW 화재 등에 이르기까지 소비자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음. 정부의 늦장 대응과 가해기업들의 책임 회피로부터 피해자들의 고통을 해소하고 재발 방지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배상법과 함께 집단소송제도 소비자 일반 분야로 우선 적용하고, 집단 피해가 우려되는 모든 분야로 폭넓게 확대해야 함
- ③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2005년부터 시행됐지만, 개별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은 소액으로 치부되는 문제, 까다로운 소송 제기 요건과 복잡한 절차, 비싼 소송 비용, 입증 책임 한계, 소송기간 장기화 우려 등으로 정작 소송을 제기하는 피해 소비자가 적은 상황임. 특히 법원이 소송 허가를 결정할 때, 피고 측이 즉시항고나 재항고를 해서 소송이 수년간 지연되면서 소를 취하하거나 조정되는 경우가 많았음. 즉시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 본안사건을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안사건 재판부가 즉시항고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해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법제도 취지가 훼손됨

4. 생활화학제품 소비자의 생명 건강을 지키는 「화학물질·제품안전대책」 강화

1) 목적 : 화학 물질·제품 안전관리 통합 및 관리체계 일원화,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 공개·표시제 도입

- ① EU REACH(유럽의 화학물질 등록, 평가 등에 관한 제도)의 경우 엄격한 화학물질 평가 과정을 통해 등록을 마친 화학 물질만이 제품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개별법(예. 화장품법, 살생물제법, 식품접촉물질법 등)으로 전달되고, 품목별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고 유통함. 국내 법제도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의 위상을 화학물질관리 기본법으로 상향시켜야 하며, 화학물질과 제품의 일원화된 통합 관리를 위해 정부 각 부처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함. 우선 어린이 제품의 안전관리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해, 물질과 제품을 통합 관리토록 해야 함(※ 참조: 2018년 환경부 '국가 화학안전 관리 종합계획 마련 연구' 보고서)
- ②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과 국민들의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우려를 해결할 수 있도록 화장품 전 성분 표시제와 같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등에 '전 성분 공개·표시' 관련 조항을 신설해 법률에 시행 근거를 명시하고 운영토록 해야 함

2) 제도 개선 필요성 (현행 제도의 문제점 등)

- ① 가슴기살균제 참사 이후 화학물질과 제품 안전관리의 통합 필요성이 대두됐고, 2016년 11월 정부 관계부처 합

등으로 발표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으로 유해화학물질 누출 가능성에 따라 생활화학제품과 고형제품을 환경부로 관리하는 것으로 통합됨. 환경부에서 화학물질과 제품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품목은 생활화학제품 35개 품목과 살생물 제품 뿐인 것이 문제임. 시중에 유통 중인 수많은 화학물질과 제품 관리체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법과 위생용품법, 산업통상자원부의 어린이제품특별법 등 개별 정부 부처로 나뉘어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중복 규제나 사각지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을 중심으로 관리를 일원화하여 책임을 분명히 하는 체계의 변화가 필요함

② 사상 최악의 생활화학제품 참사인 가습기살균제 참사 뒤, 2019년 「화학제품안전법」이 제정됨.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지정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업체가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용도'를 정부(환경부)에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전 성분을 공개·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생활화학제품 위해 정보 등 제품 정보 제공은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음. 문제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해물질 정보 알권리 강화(57-2)'는 지켜지지 않고 있음

공공교통안전강화-교통기본법 제정

1. 과제명

공공교통안전강화-교통기본법 제정

- ①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행복한 생활은 의식주만으로는 부족하고, 교육, 의료, 교통을 더하여 6가지가 필수 조건임
- ② 이 필수 조건들을 보장받지 못하면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한 삶을 영위할 수 없음
- ③ 누구나 평등하게 이동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이므로 교통은 안전, 쾌적, 편리, 저렴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법으로 보장해야 함

2. 세부과제

1) 통합적 공공교통 체계 구축

- ① 현재의 교통체계는 자동차 중심의 도로교통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중교통의 이용여건이 악화될수록 자가용 승용차의 이용은 확대될 수밖에 없음
- ② 이러한 교통체계는 사회 전체가 누려야 할 편익을 감소시키게 되므로 통합적 공공교통 체계를 구축하여 교통권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함

2) 교통약자 존중 정책 도입

- ①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대책과 소득격차, 지역적, 신체적 조건 등에 따른 교통의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약자를 존중하는 정책 도입이 시급함

3) 안전 재원 마련을 위한 대중교통특별회계 마련

- ① 공급 위주에서 수요관리, 효율 중심에서 형평 중심으로 교통정책의 방향을 전환하여 공공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교통재정체계가 개편되어야 함

② 현행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이용자 요금보조, 안전시설 투자 등의 공공교통 인프라를 위한 대중교통특별회계 재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4) 교통분야 민자사업 중단

- ① 선거시기 공약용으로 우후죽순처럼 추진되고 있는 교통분야의 민자사업은 민간사업자의 수익이 최우선이기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이용자들에게 최적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 채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 ② 이는 교통권이 침해되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민자사업은 중단되어야 함

3. 목적

- 1) 누구나 차별 없이 안전하게 최소한의 교통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권개념을 규정함
- 2) 사람 중심의 교통,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실현을 위해 공공교통의 목표와 방향, 계획을 명확히 제시함
- 3) 교통권을 실현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지역 간의 통합성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경제 및 사회발전, 지역의 균형개발을 촉진하는데 기여함

4. 필요성

- 1) 최근 기후변화, 미세먼지 대책 등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해 교통정책의 사회적 의미가 강조되고 있으며, 인구감소와 노년층의 증가로 미래 사회의 교통권 보장은 중요한 사회 이슈로 부각될 것임
- 2) 교통체계가 사적 영역으로 가지 않도록 공공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며 재정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서 벗어나 공공교통 재정의 개편이 필요함
- 3) 이에 개별 교통법제를 포괄하여 교통정책의 기본원칙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이 있음

5. 현행 제도의 문제점

- 1) 현재 한국의 교통정책은 전체적인 기본방향과 원칙 없이 개별 업종/부문별 진흥체계와 규제정책으로 나열되어 있는 형태임
- 2) 또한 한국의 교통관련 법제는 개별법 중심의 체계로 교통정책의 기본원칙과 더불어 이동약자들의 교통권 보장과 교통정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규정이 거의 적용되지 않는 상황임
- 3) 교통의 운송수단 간의 위상체계 그리고 이에 따르는 인프라 정책, 그리고 기후위기에 따른 전환의 방향과 그 과정에서 필수적인 시민들의 교통권 보장 등과 같은 사항들이 체계적으로 제시되는 기본법이 필요함

국민의 알권리 보장, 제대로 된 유전자조작식품(GMO) 표시제도 시행

1. 과제명

국민의 알권리 보장, 제대로 된 유전자조작식품(GMO) 표시제도 시행

2. 세부과제

- 1) 원료기반 유전자조작식품(GMO) 표시의 시행
- 2) 비의도적 혼입 및 표시면제 기준 현행 3%에서 1%로 강화
- 3) 비상식적인 NON-GMO 표시기준 개선

3. 목적

유전자조작식품의 표시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

4. 필요성

1) 원료기반 유전자조작식품(GMO) 표시제도의 시행

- ① 현행 유전자조작식품(GMO) 표시제도는 GMO원료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제, 가공 과정을 거쳐 GMO 유래 단백질(DNA)가 잔존하지 않는 식품의 경우에는 표시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 ② 이에 따라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식품 중 식용유, 간장, 당류 등 매년 200만 톤 이상의 GMO원료를 사용하여 생산, 소비되는 식품들이 GMO원료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GMO에 대한 표시 없이 시중에 대량 유통되고 있음

- ③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럽과 같이 GMO 유래 단백질(DNA)의 잔존여부가 아니라 원료사용 여부에 따라 표시하도록 해야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음

2) 비의도적 혼입기준 3%에서 1%로 강화

- ① 현행 유전자조작식품(GMO) 표시기준에 따르면 비의도적 혼입율이 3% 이내인 경우에는 GMO표시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 ② 이 같은 기준은 유럽, 호주 등 GMO표시 선진국의 0.9%에 비하면 비의도적 혼입기준은 매우 높은 수준이며 충분히 1%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음

3) 비상식적인 NON-GMO 표시기준 개선

- ① 현행 표시기준에 따라 NON-GMO표시 또는 GMO FREE 표시를 하려면 비의도적 혼입이 전혀 없는 0%(불검출) 기준을 충족해야 함
 - ② NON-GMO표시는 GMO 식품을 가급적 피하고 NON-GMO 식품을 이용하려는 소비자, 국민들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또한 GMO 식품이 아닌 NON-GMO 식품을 생산하여 국민들에게 공급하려는 식품산업의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
 - ③ 그러나 현행 NON-GMO표시기준이 요구하고 있는 비의도적 혼입치 0%(불검출) 기준은 광범위하게 GMO 농작물의 생산이 확산되고 수입, 유통이 대규모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충족될 수 없는 기준이며 극미량의 혼입 우려로 인해 NON-GMO표시를 사실상 금지하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하고 있음
- 극미량의 GMO 유래 단백질이 검출되는 경우에도 NON-GMO표시를 금지하는 것은 비의도적 혼입의 원천적 책임이 GMO를 연구개발, 생산, 유통하는 국가, 기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비의도적 혼입의 피해자인 소비자, NON-GMO 농식품을 생산하는 농민, 식품기업에 전가하는 것임
- 이 같은 기준은 알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NON-GMO표시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 선택할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음

5. 현행 제도의 문제점

1)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관련 규정

제3조(표시대상) ①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시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 이하인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가. 구분유통증명서

나. 정부증명서

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2. 고도의 정제과정 등으로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 검사불능인 당류, 유 지류 등

제5조(표시방법)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7. 생략

8.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표시대상 중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로서, 표시대상 원재료 함량이 50%이상이거나, 또는 해당 원재료 함량이 1순위로 사용한 경우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비의도적 혼입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9. 생략

2) 문제점

① 유전자조작 DNA, 단백질 잔존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표시기준의 문제점 : 식품 생산에 사용한 원료가 GMO 원료임에도 불구하고 GMO 유래 단백질(DNA)가 정제과정을 거쳐 잔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광범위한 표시의무를 면제하여 다소비 식품인 식용류, 간장, 당류 등에 GMO 표시가 된 상품이 거의 전무하며 이를 소비자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함.

② 너무 높은 비의도적 혼입 기준 : 유럽, 호주 등의 국가(0.9% 또는 1%)에 비해 한국의 비의도적 혼입 기준(3%)이 지나치게 높아 표시면제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함

③ 비상식적인 NON-GMO 표시기준 : 비의도적 혼입의 근본적 책임이 GMO를 연구, 개발, 생산, 유통해온 국가, 기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GMO가 아닌 농식품을 생산, 소비하고자 하는 생산자, 소비자에게 비의도적 혼입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비의도적 혼입에 관한 최소한의 허용치를 두는 것이 필요함

탈핵 에너지 전환

1. 과제명

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2. 세부과제

1) 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 ①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및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법제화
- ② 세계적으로 공인된 탈핵 로드맵 뿐 아니라 에너지 수요관리와 에너지 이용 효율화,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 제정 필요
- ③ 원자력진흥법 폐지, 원자력이용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폐지하고 관련 위원회 해소
- ④ 원자력연구개발기금 폐지 및 에너지전환연구기금 신설

2) 원자력안전규제 제도 개선 및 안전성강화

- ① 핵발전소 인근 지역 지자체 및 주민들의 당사자 권한을 강화하고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 ②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 명확화와 장관급 격상 등 독립성 강화
- ③ 현재 비상임 중심의 위원회 구성을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개편
- ④ 주민의견수렴 의무화(핵발전소 사고 후 재가동 시 인근지역/지자체 동의권 보장 등)

3)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중단과 제대로 된 공론화 추진

- ① 현재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활동은 이해당사자들이 배제되었으며, 근본 대책 없이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기구로 전락함
- ② 현재 추진 중인 공론화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수립을 위해 위원회 재구성 필요

4) 핵재처리 연구 금지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개혁

- ①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하나로원자로 안전성 문제, 핵폐기물 무단 방출 및 분실,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논쟁, 중저준위핵폐기물 계측 오류 등 다양한 쟁점이 있음
- ② 위험을 가중시키는 파이로프로세싱 등 핵연료 재처리 연구 금지
- ③ 한국원자력연구원 전면적인 안전실태조사 및 안전연구 중심으로 조직 개혁
- ④ 대전지역 핵시설 안전성을 조사를 위한 민간환경감시기구 예산 및 조직 강화

5) 생활방사능 안전 및 발전소 주변지역 피해 주민 대책 마련

- ①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성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한 대응 강화
- ② 일본산 방사능오염 검사 강화
- ③ 핵발전소 인근 피해주민 대책(이주등) 마련
- ④ 시민, 지방정부 참여 생활방사능 감시 시스템 마련

6) 탈핵에너지 전환 교육홍보 강화

- ① 우리 사회 탈핵에 대한 동의 수준은 매우 부족한 실정임
- ② 핵발전의 위험성을 떠나 에너지민주주의, 에너지 분산/분권, 재생에너지로 전환 등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는 교육과 홍보 강화

화학물질 안전강화-배출량 제도개선

1. 과제명

화학물질 안전강화-배출량 제도개선

2. 세부과제

- 1)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 개선
- 2) 실효성있는 운영을 위한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개선

3. 목적

- 1)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 개선을 통한 사업장 화학물질 '진짜 배출량' 공개
- 2)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개선을 통한 사업장 실질적인 저감이행점검과 결과공개

4. 필요성

- 1) 화학물질 대기배출로 인한 국민적 불안은 가중되고 있고 건강과 생명에 심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 기업의 이윤 추구에 의해 국민 건강권이 외면되어서는 안됨. 화학물질 진짜배출량에 대한 국민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기업에 의해 고무줄처럼 줄었던 늘었던 할 수 있는 현 조사제도 개선이 필요함. 진짜 배출량을 알아야 제대로된 대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임
- 2) 사업장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화학물질의 사용량과 배출량 저감정책에 달려있음. 다행히 우리나라도 미국의 독성물질저감법과 유사한 배출저감제도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시행되고 있음. 하지만 앞서 제기한 진짜배출량을 알 수 없는 현 상황에선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음, 또한 기업이 제시한 배출저감계획과 이행점검에 있어 제도적 한계가 있음. 따라서 조속한 제도개선을 통해 진짜배출량과 실제적인 배출저감결과가 공개되어야 함

5. 현행 제도의 문제점

1) 환경부는 매년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량을 조사하고 있음. 그런데 이 조사는 사업주가 조사표에 배출량 산정방법을 통해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전부임. 사업주는 배출량 산정방법 4가지(직접측정법, 물질수지법, 배출계수법, 공학적계산법) 중 가장 손쉬운 배출계수법에 의해 환경부에 보고하고 있고 이 자료에 대한 검증방법은 없는 실정. 배출계수법은 정해진 배출계수에 배출원(장치)수와 연간조업시간 등을 곱해서 산출함. 사업주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저감가능함. 그러나 실제 저감된 것인지는 알 길이 없음.

2012년 오창 셀가드코리아, 2015년 여수 엘지화학, 2016년 광주 세방산업은 주민의 문제제기로 지역여론이 높아지자 다음해에 배출량을 대폭 저감하거나 저감계획을 세우는 등의 대책을 마련한 사례가 있었음. 이는 반대로 얼마나 배출량 산출이 사업주에만 맡겨져 있는지를 반증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음. 이러한 문제는 2016년 11월 환경부, 강병원 의원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가 주최한 '발암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도 드러난 바 있으며 당시 환경부는 제도 개선을 위한 TF팀 구성 등을 약속한 바 있음.

2) 2019년 11월 29일부터 사업주의 화학물질 배출저감의무화 제도(화관법 11조2)가 시행되었음.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2에 따르면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 이행해야 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출저감계획서 이행에 대하여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을 출입하여 배출저감과 관련된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음

이 제도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근본적 문제인 화학물질 자체의 배출량저감을 위한 제도라는 점과 배출저감의 주체는 사업주이고 배출저감 이행의 조력자로 지자체장 의무를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하지만 대상 물질(1급 발암물질 9종)과 사업장(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종업원수 30인 이상 전국 367개)범위가 너무 협소한 점과 배출저감계획 검토 결과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미흡한 점, 그리고 지자체의 사업장 출입·조사 절차 매뉴얼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있는 시행을 위한 보완이 시급한 상황임. 고시 및 지침 등 하위법령 제도개선을 통해 보완이 필요한 상황

석면안전과 철거관리강화

1. 과제명

석면안전과 철거관리강화

2. 세부과제

1) 학교 석면철거 안전강화

교육부가 학교 석면철거 공사를 2027년까지 완료한다는 목표 하에 진행됨에 따라 안전은 뒷전이 되었는데 석면 철거 공사는 국민건강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공사 매뉴얼이 갖춰져야 하고 이에 대한 관리가 잘 이루어지면서 진행해야 함

2) 석면철거 시민참여권 확대

석면철거 시민 명예 감리제도를 시행하여 석면 철거 시 현장 감시 및 관리 감독 역량을 강화해야 함

3) 환경보건안전교육으로 국민의 알권리 확대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노출되고 있는 1군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가 해마다 수백 명씩 늘어가고 있고 향후 수십 년간은 계속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석면의 유지보수나 석면철거에 따른 건강안전관리가 교육의 필수 교과내용에 포함되어야 함

4) 농어촌지역 석면슬레이트 해결 위한 '슬레이트 제거 공동체 운동' 필요함

3. 목적

1) 석면의 위험성

석면은 유연성, 난연성, 내화학성, 열과 전기 절연성을 띠고 있어서 석면방직, 조선업, 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 등 다양한 용도로 제조되었는데 특히 건축물의 건축자재로 우리 사회 곳곳에 널리 사용되어졌음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군 발암물질로 규정하였는데 석면으로 인한 대표 질환은 석면폐증, 석면폐암, 악성 중피종이 있으며 특히 악성 중피종의 경우 최근에는 젊은 층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석면 질환이 일시적 노출이나 간접 노출로도 생길 수 있음

2) 석면 관련법 제정현황

석면은 한국에서 2009년 이전에 지어진 대부분의 건축물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우리 생활 주변 모든 곳에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한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보건 문제 중 처음으로 국가적 관리를 시도한 발암물질이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2009년 석면사용금지, 2011년 석면피해 구제법 등을 제정했음

3) 국내 석면 피해 현황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한국이라는 지역 환경 내에서 사용되어진 석면으로 인한 석면피해는 석면피해 구제법이 시행되고 2011년 석면피해(특별유족) 인정이 이루어지면서 2020년이 된 올해(현재)까지 국내 석면피해 인정자는 6,130명에 달하고 이 중 특별유족(사망자)은 1,205명이며 연평균 600명의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

4) 젊은 석면피해자의 증가

석면피해자가 석면광산 종사자나 주변지역 거주민, 제조공장 노동자나 지역 거주민에 주로 집중 되었고 일반적으로 석면에 의한 건강피해는 20~30년간의 오랜 잠복기를 거친 후 비교적 고령에서 발병해 왔는데 근래에 한국에서 발생하는 석면피해자는 최소 만 18세에 발병한 케이스를 포함해서 20대의 젊은 석면피해자가 늘고 있으며 이들의 석면노출지점에 대한 분포 또한 불특정하다는 공통점이 있고 이로 인한 불안감이 사회전반에 걸쳐 확대되고 있음

5) 목적

국민건강에 지속적으로 크게 위협을 가하는 석면에 대한 유지 시 안전관리 및 철거 시 안전한 공사 진행 및 관리감독 강화를 체계적으로 재정립해야 함

4. 필요성

1) 석면 건축물은 대개 유지보수로 관리되거나 철거로 해체된다고 볼 수 있는데 한국은 석면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을 적극적으로 해체 제거하는 것을 국가적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우선 시행 대상으로 농어촌지역 슬레이트 지붕(철거)개선사업, 전국 학교 석면철거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음

2) 2017년에 시행된 학교석면철거 이후 학교석면철거 현장에서 끊임없이 석면철거의 문제점이 해당 학교의 학부모나, 지역민, 시민 모니터링 단 등에서 제기되고 있고 더불어 관 주도의 철거는 아니지만 노후화된 지역의 재개발과 재건축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석면철거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대두됨

3)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는 석면에 대한 유지보수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석면 철거 시에는 잘 정립된 시행규칙에 따른 철거가 주무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함

5. 현행 제도의 문제점

석면에 대한 문제점은 크게 석면사용 건축물에 대한 유지보수와 전면적인 석면철거 시 공사 전, 공사 중, 공사 후에 발생하는데 이 때 위해가 되는 대상은 철거시행 노동자, 해당 공간 거주자, 주변 지역 거주자이며 더 넓게는 철거된 석면폐자재 관리 문제까지 확대될 수 있음 (*현재 석면관리 유지보수와 석면철거에 발생하는 문제점은 학교석면철거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음)

1) 석면사용공간에 대한 유지보수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 ① 석면을 관리하기 위한 석면조사를 통해 만들어지는 석면지도에 누락 되는 부분이 많기에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필요. (이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석면철거 사전 석면조사에서도 비밀비재하게 발생함)
- ② 석면조사에서 위해성 평가에서 '위해성이 없음'이라고 좋게 평가한 곳이 실제로 현장 확인 시에는 위해성이 높게 나옴
- ③ 현행 유지보수기준(페인트, 도배 등)이 모호하여 석면유지보수공사를 어렵게 하고 있음
- ④ 석면안전관리인(학교장, 시설주무관)의 석면위험인식 및 석면지식 부족으로 인한 유지보수 관리가 불안정함
- ⑤ 유지관리 예산의 미배정으로 인한 보수장비 미비 등으로 관리의 질이 낮아짐

2) 부분철거공사(환경개선공사, 인테리어공사)의 문제점

- ① 소규모의 부분철거공사는 석면해체 공사기준에 의한 예산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공사의 질이 매우 낮음
- ② 소규모 석면철거 공사의 경우 오로지 노동부 매뉴얼(소규모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관리 가이드)을 적용함으로 인해 음압사용(석면비산억제)이 없고 석면농도 비산측정(석면흡입가능성 검증) 역시 이루어지지 않음
- ③ 석면해체업자의 공사이행의무가 없어서 공사에서 발생하는 석면비산으로 인한 책임이 없음
- ④ 반복되는 석면철거공사로 인해 학생과 교직원의 석면노출 횟수 증가와 이로 인한 석면 흡입 위험성 높아짐

3) 석면철거 공사의 문제점

① 공사 전

- 학교석면공사의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정보 부족과 이에 따른 석면조사, 석면해체업체, 감리업체에 대한 관리소홀
- 석면철거공사의 문제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교육부 매뉴얼

- 석면조사 만들어진 석면지도가 잘못되어 재검증 절차를 거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석면해제 및 제거공사 공사 강행(2018년 12월 감사원 교육부에 석면지도 재검증 지시)
- 업체등급이 미 반영된 입찰 기준, 공사 쪼개기, 안정성평가등급도 받지 않은 업체가 A등급업체라고 허위 홍보 (입찰 당시 안정성 등급이 낮은 업체에 대한 투찰제한 미적용 및 하청업체 공사로 인한 예산 손실과 공사의 질이 낮아짐)
- 학교마다(특성화학교 등)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교육청 별 기계적 기준단가, 무리한 공사 일정

② 공사 중

- 시공업체의 공사 매뉴얼 미 준수 및 교육청과 감리의 철저한 관리 감독 부족
- 기준에 맞지 않은 물품이용(방진복, 음압기, 석면폐기물 처리 봉투)
- 적정음압을 무시하고 음압기록 위조, 음압기록장체 조작, 감리 대타, 기존 설정해 놓은 자료 제출(노동부) 등의 위법과 편법 횡행

③ 공사 후

- 지속적이 석면 잔재물 발견(석면비산 및 이에 따른 석면 오염 가능성 높아짐)
- 농도 측정 검사 기준 미 이행(측정 시 정 음압 유지 후 시행해야 함) 및 농도 및 비산 측정업체 용역비를 철거업체를 통해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인해 분석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조건임(철거업체의 허위 보고 발생)
- 위법한 석면철거업체로 인한 잔재물 제거하는 정밀청소업체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석면 관리기준(허용농도 0.1fiber/cc)은 1,000명당 초과 사망 1명의 증거 위험성에 대한 관리 기준이지만 사람의 개인차에 의해 석면의 절대적 양에 의한 건강 피해의 불확실성과 우리 사회가 이에 대하여 목격하고 인식하게 되면서 점차 상대적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석면관리기준이나 석면측정 방법 등에 변화를 주는 등의 새로운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음.



위험의 외주화 금지

1. 과제명

위험의 외주화 금지

2. 세부과제

1)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대부분의 중대재해가 위험의 외주화로 칭해지는 도급제도로 인해 발생하고 있음. 위험업무의 도급화속에서 반복적 산재사망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대재해가 다발하는 위험업무 및 작업에 대해 외주화를 금지시킬 수 있는 법과 정책이 필요함

2)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재개정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는 취지를 내세우며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 되었으나 법에 명시된 도급금지외 도급 승인 대상 작업이 너무나 협소함.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작업을 도급화를 막는 법이 아니라 위험업무 외주화를 허용하는 법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재개정하여 하청노동자 중대재해 다발작업과 업무를 도급금지 대상으로 규정하는 등 도급이 금지되는 유해·위험 작업 범위를 확대하고, 외주화가 금지되어야 할 업종과 작업에 대한 기준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

3)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행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인 생명과 안전보장을 위해 위험의 외주화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며 <도급 금지 유해위험작업 범위확대, 생명 안전업무 구체화, 외주화 제한되는 생명안전업무의 기준 구체화, 원 하청 통합관리 범위 확대, 엄중한 처벌과 지도감독 방안 마련> 등을 노동부에 권고했음. 위험의 외주화 금지는 인권위 권고 이전에 대통령과 정부의 국민 앞의 약속에 해당하며, 대통령이 '국가 인권위의 개선 권고에 대한 정부기관의 수용도'를 높이라고 지시한바 있으므로 노동부는 인권위 권고에 대한 즉각 수용과 이행이 필요함

4) 각종 조사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이행

구의역 김군, 김용균, 삼성중공업 크레인전복사고 등 사회적 이슈가 된 주요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는 국민의 이름을 내세우며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각종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및 권고 이행을 약속했으나, 전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하위법령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이행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음.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고 제도정책 마련을 제안한 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이행해야 함

3. 목적

자본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추진된 유해위험의 전가와 유해위험작업의 도급화로 인해 초래되는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다발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 정책 마련

4. 필요성

- 1) 사업주(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의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함으로써, 유해위험작업에 내몰리고 있는 청년·비정규직 노동자를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생명과 안전이라는 기본인권을 보장해야 함
- 2)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정부 주도로 구성 운영된 각종 중대재해조사위원회 조사 결론과 권고가 중대재해 발생의 구조적 원인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지적하고 입법화 등 제도정책 마련 권고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이를 즉각 수용하여 법 제도화에 나서야 함

5. 현행 제도의 문제점

1)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한 발짝도 진전되지 않고 있음

‘김용균법’이라 지칭된 산업안전보건법과 하위법령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대상을 매우 협소하게 규정해 위험의 외주화 금지라는 이름을 무색하게 만들었으며, 정작 김용균 노동자가 했던 위험업무는 도급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 구의역 김군이 했던 작업도 다단계 도급계약속에서 한해 50명씩 죽어나가는 조선하청 노동자 위험업무도 포함되지 못했음

2)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협소한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범위 규정

- ① 현행법의 도급금지 대상은 도급작업,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에 불과하며, 도급승인 대상은‘황산, 불산, 질산, 염산(중량비율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포함)을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제한하고 있음
- ②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도급금지과 도급승인 대상 작업이 너무나 협소하여,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청년·하청노

동자들의 죽음을 막을 수 없음

3) 고용노동부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거부

국가인권위원회가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인 생명과 안전보장을 위해 위험의 외주화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며 <도급 금지 유해위험작업 범위 확대, 생명 안전업무 구체화 및 외주화가 제한되는 생명안전업무의 기준 구체화, 원하청 통합관리 범위 확대, 엄중한 처벌과 지도감독 방안 마련> 등을 노동부에 권고했으나, 노동부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사실상 거부했음

4) 중대재해 관련 각종 정부주도 조사위원회 권고 불이행

① 정부가 국민의 이름을 내세우며 시민단체와 전문가들 참여 속에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처럼 대대적 언론 보도 속에 진행되었던 각종 국민조사위원회의 제도개선과 입법권고가 전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하위법령에 일체 반영되지 않고 배제되었으며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음

② 하청 산재의 대표적 업종인 조선업 하청 산재사망의 경우 노동부에서 구성 운영한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조선업 중대재해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다단계 재하도급 금지 등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법, 제도의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제언한 바 있음. 그러나 전면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반영되지 않았으며 하위법령 도급승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음. 또한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으로 지난 수년간의 발전소 점검, 보수작업 하청 노동자의 반복적 산재 사망이 위험의 외주화라는 구조적 원인임이 밝혀졌음에도 도급금지와 도급승인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모든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 적용

1. 과제명

모든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 적용

2. 세부과제

1) 모든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① 특수고용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조문 개정 및 대상 확대

- '주로 하나의'로 전속성 제한 조항 삭제

- 적용대상 확대 및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②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적용제외 조항 전면 폐기

③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임 대상 확대

2) 모든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①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 특수고용노동자, 문화예술인 등 전면 적용 및 산재보험료 부담 폐지

②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 전면 폐지 및 별도 보상체계 전면 개혁

- 농업 노동자, 가사사용인 등 적용제외 대상 전면 폐지

- 선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직업군인 등 별도 보상체계 전면 개혁

③ 산재보상 급여 확대

- 요양급여의 개인부담금 전면 폐지

- 휴업급여 인상

- 재할급여 및 직업복귀 확대

④ 직업병 인정기준 개정 및 산재심사승인제도 개혁

- 추정의 원칙 확대 및 직업병 심사승인 제도화

- 직업성암등 직업병 인정기준 확대 및 정기적 개정 제도화

3. 목적

고용구조의 파편화 다변화 속에서 산업안전, 산재보상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적용대상을 전면 확대

안전과 보상의 내용적 측면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실질화 할 수 있도록 노동자 참여 전면 확대

4. 필요성 및 현 제도의 문제점

1) 고용구조가 파편화되어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등이 확대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가 협소하여 위험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음.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이면서도 안전교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원청책임 등 주요 조항이 적용 제외 대상이 많아 산재다발의 주요 취약계층이 되고 있음.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적용되어야 함

2)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특수고용노동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250만 특수고용 노동자 중에서 9개 직종 45만 명만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적용되는 안전조치, 보건조치도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와 차등을 두고 있음

3) 점차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는 다수 사업자와 계약을 맺거나, 중개사업주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적용제외 되고 있으며, 개정 산안법에서 이륜자동차 배달 노동자등 극히 일부만 적용

4)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서비스업을 비롯한 서비스업 노동자, 지자체 및 공무원등 공공행정, 사회보장 행정 등은 업종 전체가 안전교육, 안전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등 노동자 참여제도가 배제되고 있음. 이는 건설, 제조업 중심의 사고성 재해 중심의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며, 사무직 서비스 노동자의 급증, 근골격계 질환, 감정노동, 정신건강 등 급증하고 있는 직업병 산재에 대한 몰인식을 증명하고 있음

5) 5인 미만 사업장과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등은 안전교육,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노동자 참여제도가 적용배제 되고 있음.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노동자 참여제도가 배제되고 있음. 이러한 제도적 문제는 한국의 산재 80% 이상이 중소기업에 집중 발생하게 된 원인이며, 지속적인 산재예방 대책이 무용지물인 원인이기도 함

6) 이에 고용구조의 변화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도록 법 개정되어야 함

7) 일하다 죽거나 다치고 병든 노동자에 대한 보상과 치료 및 재활은 사회안전망의 최소한의 조치임. 그러나, 사회보험제도인 산재보상제도는 노동자를 전면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상수준도 낮아 치료비에 대한 개인부담이 높고, 선진외국 대비 휴업급여 수준도 낮아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필요

8) 고용구조가 파편화 되고 있으나, 현행의 산재보상보험법은 250만 특수고용노동자중 9개 직종만 적용하고 있고, 산재보험료도 노사가 각각 50%씩 부담하고 있어, 저소득 계층인 특수고용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

9) 가사사용인, 선원, 농업 노동자등 산재가 다발하는 노동자들이 오히려 산재보상에서 적용제외 되고 있으며,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 별도의 보상체계가 있는 노동자의 경우에는 보상기준이나 심사승인 제도의 취약으로 불승인이 남발되고 있음

10) 산재보상이 적용되는 노동자의 경우에도 비급여가 많아 치료의 개인부담이 높고, 선진외국은 80% 수준의 휴업급여와 단체협약 등으로 산재노동자의 개인부담 비용이 거의 없으나, 한국은 개인부담이 많고, 기업의 추가 보상도 취약한 상황임

11) 직업병의 경우에는 산재 승인률이 여전히 60%내외여서 불승인 비율이 높아, 직업성 암이나 정신질환, 자살 등의 경우에는 선진외국에 비하여 산재발생 대비 산재신청률이 낮은 상황임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 위험에 대한 알권리 보장

1. 과제명

알권리가로막는 산업기술보호법 재개정

2. 세부과제

- 1)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를 모두 비공개하는 제9조의2 삭제
- 2) 산업기술 포함 정보를 공익적으로 공개해도 처벌하는 제14조 8호 문제가 없도록 개정
- 3) 광범위한 비밀유지의무로 입막음을 강제하는 제34조 10호 문제가 없도록 개정

3. 목적

- 1) 위험에 대한 문제제기에 기업이 비밀주의로 대응할 수 없도록 하고 알권리를 보장
- 2) 위험에 대한 공론화를 막는 장벽을 제거하여 또 다른 사고를 예방
- 3) 기업의 이윤과 국가의 경제를 이유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경시되지 않도록 함

4. 필요성

- 1) 위험에 대한 알권리와 공론화할 권리 보장 기업은 대개 사업장 내 안전보건 문제를 조용히 덮고 넘어가려고 함. 이렇게 되면 위험은 제거되지 않고 또 다른 피해를 낳음. 따라서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서 기업의 비밀주의를 막아야 함. 문제가 예방될 수 있도록 위험에 대한 공론화는 독려하고 보호해야 함
- 2) 정권에 따라 악용될 여지가 큼 이 법은 개정 이유부터 삼성이 안전보건자료를 숨기려는 시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함. 지금도 그 영향이 확인되고 있고, 앞으로 정권이나 사회적 분위기가 바뀐다면 그 영향은 더욱 커질 수 있음

5. 현행 제도의 문제점

1)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면 어떤 정보이든 어떤 이유이든 비공개(제9조의2)

①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사업장 안전정보도 비공개

- 이 법은 국가핵심기술에 관련된 정보이든 어떤 정보이든 따지지 않고 비공개하도록 함. 특히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기술과 관련된 정보' 모두에 대해 비공개로 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임. 공익적으로 정보공개가 필요한 안전보건 자료들은 대개 기술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가 아님(따라서 영업비밀도 아님). 가령 국가핵심기술 문제로 공개가 제한된 작업환경측정보고서의 경우 사업장의 유해물질의 노출 기록일 뿐임. 그런데 위 조항에 따르면 작업환경측정보고서도 국가핵심기술 사업장인 반도체 공장과 '관련된 정보'이므로 비공개 자료가 됨. 이런 식이라면 국가핵심기술과 조금이라도 얽힐 수 있는 정보는 실제로 얼마나 기술이냐를 떠나 모두 비공개 될 것임

② 생명안전을 위한 공익적 공개 필요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

- 설령 기업의 기술과 관련되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라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공익적 가치보다 우선할 수는 없음. 그런데도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익적 가치들을 무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우리는 사람의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하게 될 때 어떤 결과들이 야기되는지 잘 알고 있음.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국가의 국민경제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생명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됨. 이 때문에 정보공개법은 기업의 영업비밀이면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되,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라면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2) 산업기술 포함 정보면 합법적으로 알게 된 정보를 공익적 목적으로 공개하더라도 처벌(제14조 8호)

① 산업기술 포함된 정보라면 공익적인 제보도 처벌

- 이 조항은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면 합법적으로 안 정보라 하더라도 제공받은 그 목적 외로 공개하면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음. 목적 외로 공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은 그럴 듯해 보이지만,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익적으로 공개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음. 직무 상 공장 내의 위험성에 대해 안 노동자가 그 위험성을 공익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음. 법 취지인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개정 전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알게 된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활용한 경우에 대해 처벌하는 것으로 충분함

② 모호하고 포괄적인 제한영역

- 또한 처벌 대상 정보인 '산업기술 포함 정보'의 범위도 너무 넓음. 산업기술 중 하나인 첨단기술만 하더라도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약 3,000개 정도가 있음. 제한영역이 너무 넓어서 산업기술과 관련된 모든 소통을 차단하는 문제가 생김. 거기에 '포함하는 정보'라고 모호하게 정해져 있어 산업기술과 약간만 관련되더라도 적용될 수 있음

③ 향후 정권에 따라 악용될 가능성

- 위 내용으로 하는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조항을 산업기술 관련 소송을 통해서 정보를 얻

게 된 경우에 한해 대통령령으로 적용하겠다는 입장. 그러나 원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취지가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겨냥한 것이었음. 지금은 괜찮더라도 나중에는 시민사회의 문제제기 수준이나 정권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폭넓게 악용될 수 있음

3) 비밀유지의무를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사회적 문제제기를 차단(제34조 10호)

① 비밀유지의무 대상의 모호함

- 산업기술보호법은 정보공개청구 업무를 수행하면서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비밀유지의무는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정보를 알게 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부여되므로, 이 조항은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음. 그러나 법 문구가 모호하여 공무원만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정보공개를 청구한 본인 또는 대리인도 가리키는 것인지 알 수 없음. 또한 이 조항이 들어온 취지는 기업의 안전보건자료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공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음. 그래서 비밀유지의무 조항이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사회적 문제제기를 차단하는 장치로 작동할 수 우려가 있음

*참고

1) 국가핵심기술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기술. 현재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표를 통해 12개 분야 69개의 기술이 지정되어 있음

2) 영업비밀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것으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경제적 유용성),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어 온(비밀관리성) 정보여야 함

3)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장 내 유해물질 노출량 측정에 관한 기록. 어떤 유해물질에 어느 정도 노출되는지 측정된 결과가 적혀 있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1. 과제명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2. 세부과제

1) 하위직 처벌이 아니라 기업과 공무원의 최고 책임자 처벌

- ① 기업구조의 고도화로 산재사망과 재난참사 발생의 책임에서 피해나가는 기업 최고책임자 처벌
- ② 규제완화, 인허가 과정의 문제 등 산재사망, 재난참사의 정부 책임자에 대한 처벌

2) 기업법인에 대한 처벌로 재해다발의 구조적 대책 수립

- ① 안전관리 인력, 안전투자, 안전시스템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기업법인 처벌

3) 하청, 특수고용 등 비정규직 산재사망 원청 처벌

- ① 위험의 외주화가 사고의 구조적 원인이므로 진짜 사장인 원청에 대한 처벌 강화

4)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 ① 구조적 원인으로 인한 산재사망과 재난참사임에도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의 문제 발생, 현행의 피해를 복원하기 어려움
- ①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구조적 원인으로 인한 참사에 대한 보상. 기업의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강제함

3. 목적

산재사망과 시민재해에 대한 처벌 강화로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시민재해가 근절되도록 함

4. 필요성 및 현 제도의 문제점

1) 한국은 전근대적인 산재사망과 재난사고가 반복되고 있음. 생명안전에 대한 법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실질적 산재사망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근본원인은 범위반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고, 하급관리자만 처벌하고 기업의 최고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임. 이에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강력히 요구됨

2) 산재사망 및 재난사고 반복적 발생의 근본원인은 사망에 대한 기업의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임. 정부 감독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산재사망이 발생해도 기업은 평균 430만원 내외의 벌금에 그치고, 실행은 1%도 구형되지 않는 현실에서 기업은 안전을 위한 투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재발방지 대책의 근본적 수립을 하지 않음



과로사 예방법 제정

1. 과제명

과로사 예방법 제정

2. 세부과제

- 1) '과로'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
- 2) 직장 내 괴롭힘, 고객으로부터의 괴롭힘 등에 대한 종합적 예방과제 수립
- 3) 장시간 노동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집단에 대한 총체적 예방과제 수립
- 4) 정부부처간 합동으로 종합적 예방과제 수립
- 5) 과로 피해집단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구조의 거버넌스 구축

3. 목적

- 1) 현재에도 큰 문제이고 향후 더 큰 문제가 될 '일하는 사람의 과로사망'에 대한 총체적 예방활동 진행 필요
- 2) 매년 국회에 보고되고 심의되는 예방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해 전국민의 관심대상이 되도록 함
- 3)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의 통제를 받도록 규정해 실질적인 이행성을 확보

4. 필요성

1)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연착륙 전략이 부재

2018년 2월 대대적인 노동시간 단축 법제화 이후 2018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만 4년에 걸쳐 차등적으로 노동시간이 감축될 전망이다. 그러나 2018년 7월부터 시행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규제를 연말까지 6개월 간 보류했고 탄력근무제 확대와 한시적 근무시간 연장 등 다양한 노동시간 중대 계획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 이러한 현상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고 국가적 차원의 노력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반증함. 결국 2021년까

지의 순차적 적용이 제대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

2) 노동시간 단축 예외 대상이 너무 많음

일본의 경우 노동시간 규제에 적용제외 대상이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특례업종' 근로자, '제외업종' 근로자, '재량' 근로자 등은 노동시간 규제 대상이 아니거나 아닐 수밖에 없는 조건에 처해진 근로자들로 실제 노동시간 규제를 받지 않게 됨. 추정할 수밖에 없지만 이 규모는 전체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를 훌쩍 넘기는 큰 규모임. 이는 근로기준법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가능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규모가 이렇게 크다는 것은 그만큼 촘촘한 관리와 계획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음

3) 일하는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예방 계획이 필요

노동자와 사업주의 영역이 갈수록 흐릿해지고 있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경제활동인구 중 근로자의 비중이 갈수록 줄어드는 현상은 플랫폼 노동을 하는 집단과 영세한 자영업자(특고 포함)의 증가 때문임. 약 2천 8백만 명의 경제활동 인구 중 임금근로자의 수는 약 2천만 명으로 8백만 명의 일하는 사람들은 모든 임금근로자가 보호를 받는다고 가정해도 제외되는 집단이 됨. 건강형평성에 있어 누구도 예외가 될 수는 없음. 그렇다면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녕을 위한 노동시간 규제는 몇몇 제도를 바꾼다고 가능하지 않을 것임. 이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 문제임

4) 노동시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자·고객으로부터의 괴롭힘도 예방 대상이 되어야 함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적정 노동시간 일하게 되는 장기적이고 고난도의 제도를 연착륙시킨다고 하더라도 고객의 갑질, 관리자의 괴롭힘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면 직무스트레스는 극도에 이를 것이고 결국 뇌심혈관계질환이나 정신질환을 겪게 될 수밖에 없게 됨. 따라서 현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에 흩어져 있는 주요한 보건상의 조치들을 과로사예방법에서 함께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

5) 사회적 수용가능성을 높이는 종합적, 총체적 노력이 필요

선행연구들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최저임금을 적용받거나 그조차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는 근로자 집단은 노동시간 규제를 받기지 않음. 그 이유는 생활임금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임. 수혜당사자가 제도 수용성이 없다면 새로운 규제는 자리 잡기 힘들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왜곡을 발생. 따라서 제도개선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만 작동해서는 안 됨. 임금수준에 대한 고려도 필요. 임금은 사회적 임금과 개별 임금으로 구분할 수 있음. 두 가지를 모두 합칠 때 실질적인 구매력의 변화가 나타남. 즉, 사회복지의 향상이나 주택가격의 안정화, 교육제도의 변화, 최저임금의 현실화 등이 모두 맞물려 해결되어야 함. 역시 장기적인 부처간 협력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 가야할 일임. 이는 한국경제의 건강한 체질개선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

5. 현행 제도의 문제점

- 1) 2017년 기준 직업을 가진 사람 중에 순환기계질환으로 사망한 국민의 규모가 5,500여명, 자살을 한 국민의 규모는 4,900여명. 이들의 사망이 직업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 자살률은 OECD최고 수준. 2018년 산재로 인정된 사망 규모는 뇌심질환의 경우 450여명, 자살의 경우 40여명으로 나타남. 따라서 일하는 사람이 과로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규모는 산재 승인된 자료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
- 2) 연간 1만 명 일하는 사람의 사망(순환기계질환, 자살)을 관리할 수 있는 총체적 대책이 없다는 문제가 존재. 일본은 이미 2014년 과로사방지법을 제정함

노동자·시민의 알권리와 참여 보장

1. 과제명

노동자·시민의 알권리와 참여할 권리, 작업중지권 보장

2. 세부과제

1) 국민 참여사고조사위 법제도화

- ① 중대재해 사고조사 현장 노동자 참여 보장 제도화
- ② 중대재해 사고조사 결과 공개 제도화
- ③ 노동자, 시민, 피해자 참여 보장하는 국민 참여 사고조사위 구성 제도화

2) 화학물질 등 유해위험 정보 노동자, 시민 알권리 보장

- ① 작업환경측정 및 화학물질등 사업장 유해위험 정보 전면 공개 제도화
- ② 산업기술보호법의 알권리 침해 규정 삭제

3) 작업중지권 보장

- ① 급박한 위험에 노동조합 및 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
- ② 급박한 위험 및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노동자 작업 중지 불이익 처우 형사 처벌
- ③ 노동부 중대재해 발생 전면 작업 중지 법제화

4) 노동자 시민참여 보장 제도화

-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적용대상 전면 확대 및 하청 노동자 참여 보장
-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대상 확대 및 현장 출입권 등 권한 확대
- ③ 근 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위험성 평가 등 노동조합 및 노동자 참여 확대
- ④ 노동자 참여 제도 실질화 위한 정부 감독 강화 제도화
- ⑤ 공공기관 노동자, 시민참여안전 경영 위원회 구성 확대 및 실질권한 보장

3. 목적

안전은 기업이나 정부 중심의 통제와 관리 대책만으로는 담보할 수 없음.

일상적인 현장 활동부터 사고발생과 대책에 이르기 까지 노동자, 시민의 참여 보장을 구조화 제도화

4. 필요성 및 현 제도의 문제점

1) 반복적 사고와 직업병 발생의 근본원인은 노동자, 시민이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알권리, 위험작업을 거부할 권리, 사고조사와 산재예방에 참여할 권리가 제한되고 있기 때문임. 한국의 산재사망과 재난사고는 정부와 기업의 통제강화로만 접철되어 왔고, 노동자 시민의 권리강화에 대한 제도개선은 실종되어 왔음. 산재 및 재난사고의 근본적 감소방안은 노동자, 시민의 권리를 보장 강화하는 것임

2) 수많은 사고에서 현장작업 노동자의 위험에 대한 신고와 개선대책 요구가 있었으나 무시되었음. 또한, 급박한 위험에 대한 노동자들의 작업거부는 징계와 해고로 이어져 왔고, 결국 노동자 시민의 대량참사로 이어졌음

3) 또한 중대재해 발생시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전면적인 작업 중지를 하고, 노동조합을 참여시키는 사고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 진행되어야 함. 그러나 중대재해 노동부 작업중지 명령 범위는 전면 작업중지 에서 대폭 후퇴했고, 사고조사 및 작업중지 해제심의 과정에서 노동자 참여는 배제되고 있음

4) 반도체 전자산업의 직업성 암, 메탄올 중독 실명, 가슴기 살균제 참사 등 수많은 화학물질의 폭발, 누출, 중독으로 인한 노동자, 시민의 죽음은 기본적인 알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았고, 노동자, 시민의 최소한의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임

5) 최근 산재신청을 위한 반도체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결과도 국가기밀로 둔갑시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고, 산업기술이라는 미명하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도 공개를 제한하는 등 노동자, 시민의 유해위험 정보에 대한 알권리가 개악과 후퇴를 반복하고 있음

6) 사고조사는 노동자, 유족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고, 사고조사 결과도 비공개로 하고 있음. 이는 사고조사 단계부터 노동자, 시민의 과실로 몰고 가고, 구조적 원인 조사는 방기하는 결과로 이어져 결국 동일사업장에서 동일유형의 반복적 사고로 귀결되어 왔음

7) 문재인 정부는 '국민 참여 사고조사위원회' 제도화 추진을 발표한바 있으나 제도화 되지 않고 있음. 태안화력을 비롯한 사고조사가 개별 사안별로 조사위 구성 자체가 투쟁이며, 중요하고 대형 참사임에도 노동자, 시민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사고조사위를 구성하지도 않고 있음

8) 사업장의 산재예방을 위한 각종 제도에는 노동자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있고, 노동자 참여 제도가 있는 경우에도 규모별, 업종별로 적용제외 되거나, 하청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고 있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 노동자 참여 제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전면 적용하며, 처벌을 강화해야 함

시민사회 제안 생명안전과제 책임작성자 및 검토 단체

분야	번호	과제	세부 과제	검토 단체	작성 책임자
생 활 안 전	1	모든 사람의 생명·안전 기본권 보장	- 헌법에 생명·안전권 명시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보호	민변, 생명안전 시민넷	서채완
	2	피해자 인권 보장	- 피해자의 권리의 구체적 보장 - 피해자 집단 소송제도 도입 - 사고에 대한 독립적 조사 및 피해자 참여권 보장	민변, 생명안전 시민넷	서채완
	3	감염병 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	- 감염병 대응기구 조직개편 및 역량 강화 - 공공의료 확대 -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 감염병 대응 의료개혁위원회 구성 - 상병수당 실질적 도입 -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제도 개선	생명안전 시민넷, 민변	임석영
	4	가습기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 피해 예방 및 가해기업 책임 강화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 - 배상액 상한없는 징벌적 배상법 도입 -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 화학물질·제품 안전 대책 강화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장동업
	5	공공교통 안전 강화	교통기본법 제정 - 통합적 공공교통 체계 구축 - 교통약자 존중 정책 도입 - 교통재정체계 개편 - 교통분야 민자사업 중단	공공교통네트워크	조경욱
	6	먹거리 안전 강화	- 국민의 알권리 보장, 제대로 된 유전자조작식품(GMO) 표시제도 시행	아이쿱생협 두레생협	김대훈
	7	탈핵 에너지 전환	- 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 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 개선 및 안전성 강화 -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수립 - 핵재처리 연구 금지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개혁 - 생활방사능 안전 및 발전소 주변지역 피해주민 대책 마련 등	탈핵시민행동	안재훈
	8	화학물질 안전 강화	-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 개선 -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개선	일과건강, 건생지사	현재순
	9	석면 안전과 철거관리 강화	- 학교 석면철거 안전 강화 - 석면철거 시민참여권 확대 - 환경보건 안전교육으로 알권리 확대 - 슬레이트 제거 공동체 운동 필요	환경보건시민센터	이성진
일 터 안 전	1	위험의 외주화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재개정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행 - 각종 조사위의 제도개선 권고 이행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노동건강연대	박세민
	2	모든 노동자의 산업안전 보건법, 산재보험 적용		민주노총,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최명선
	3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 위험에 대한 알권리 보장	반올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조승규
	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 강화 - 원청 책임 강화 -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민주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회의,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최명선
	5	과로사 예방법 제정	- 괴롭힘 등에 대한 종합적 예방과제 수립 - 장시간 노동 집단에 대한 총체적 예방과제 수립 - 정부부처간 합동 종합적 예방과제 수립 - 피해집단 및 시민사회 참여 거버넌스 구축	일과건강,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인임
	6	노동자·시민 알권리와 참여 보장	- 국민참여 조사위 법제도화 - 위해 위험 정보 공개 제도화 - 작업중지권 보장 - 노동자·시민 참여 보장 제도화	민주노총,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최명선

* 참조 : 대부분은 '생활 안전'과 '일터 안전'으로 나뉘며, 번호는 중요도 순서가 아님

• 참여단체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가슴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사)김용균재단,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반올림, 노동건강연대,
일과건강, 건생지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회의, 민주노총,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 공공교통네트워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행동하는의사회, 환경운동연합, 탈핵시민행동, 환경보건시민센터, (사)환경정의,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아이쿱생협, 두레생협, 한살림연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함께하는 시민행동, 민주언론시민연합, 생명안전 시민넷

*무순